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식품 안전성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평등·상호주의와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양 기관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식약공용농산물(한약재) 포함) 안전성·품질기준에 대한 정보교환, 경험공유 및 조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식품안전성·품질기준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을 증대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항 기본원칙

양 기관은 동 양해각서와 자국의 관계법령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라 식품안전성·품질기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다.

제 2 항 협력분야

양 기관은,

1. 식품안전성·품질기준에 관련되는 자국의 관계법령 및 기타 정보를 교환한다.
2. 양국의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기준, 규격 및 검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
3. 식품의 원료로 수출입되는 식약공용농산물(한약재)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
4. 양국 소비자의 건강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여 관련기업의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지 혹은 검사강화가 필요한 경우 상호 통보한다. 통보 시, 제공하는 정보에는 제품의 종류, 발견된 문제, 검사방법, 검사결과, 생산기업, 생산일자, 수입(수출)일자, 수입(수출)항구 등이 포함된다.

5.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품질안전문제에 대하여 수출측은 통보 접수 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상응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입측에 통보한다. 필요 시, 수출측의 동의를 얻은 후 수입측은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실사 및 식품안전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출측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6. 양 기관은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품교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공인검사기관”,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도” 및 “수출입 식품기업 등록제도” 등을 활용하는데 대하여 적극 연구 토론한다.
7. 한국측은 중국측의 수출식품·농산물품질안전시범단지 건설을 지지하고, 양 기관은 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농산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한·중 식품·농산물품질안전시범단지 건설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한다.
8. 가용예산·자원의 범위 내에서 심포지움 개최, 현지설명회 개최 및/또는 공동훈련과정을 마련한다.

제 3 항 협력위원회

1. 양 기관은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추진상황을 검토하며 기타 동 양해각서와 관련되는 사안들을 논의한다.
2. 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한국과 중국에서 교대로 연례 개최하거나 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위원회의 각 회의별 구성과 의제는 양 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연락관을 지정한다.

제 4 항 비용부담

1. 각 기관은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되는 각 기관의 모든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2. 일방측의 요청에 따라 타방측이 제공하는 협조의 비용은 그 요청한 측이 부담한다. 다만, 양 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항 정보의 공개

양 기관은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과정에서 타방측이 전달하는 비밀정보를 그 타방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 동意的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제 6 항 이견의 해결

동 양해각서의 해석 및/또는 이행에 있어 양 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 7 항 효력 및 종료

1. 동 양해각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5 년간 유효하다. 동 양해각서는 일방측이 동 양해각서를 종료할 의사를 6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 5 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2. 동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3. 동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 종료 통보 시 진행중인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양해각서는 2003 년 10 월 31 일 서울에서 공식 체결되었고 2007 년 11 월 26 일 북경에서 1 차 개정되었으며, 2013 년 12 월 20 일 북경에서 2 차 개정되어 각자 동등히 유효한 한국어본, 중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2 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을
대표하여

정 승

정승